



# 2015년 연말정산실무

010-9990-0114

taxnlabor@hanmail.net



# I

## 소득세 이해하기

01. 소득세 의의
02. 납세의무자
0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0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구분
05. 과세대상
06. 소득의 구성
07. 소득세의 계산 구조
08. 기본세율

# 01. 소득세 의의

## 1)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2) 종합소득세 제도

- 합산과세(종합과세)

:  $\text{이자소득} + \text{배당소득} + \text{사업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기타소득} + \text{연금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06. 소득의 구성

## 1) 종합소득

이자소득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배당소득	주식 등을 투자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분배받는 대가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 받는 대가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연금소득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에 열거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합산·누진세율 적용  
(매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여 계산)

※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 06. 소득의 구성

## 2) 퇴직소득

-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급여

종합소득과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

## 3)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

### ※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효 과 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과는 따로 분류하여 과세함

# 08. 기본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공제법)	적용세율(가산법)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760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X 38%

# II

## 연말정산개요

01. 근로소득
02.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수입시기)
03.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 특례
04. 총급여액의 계산 · 평가
05. 연말정산 의무자와 세무처리 방법
06.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07. 연말정산 대상자
08. 연말정산 시기
09. 연말정산세액의 납세지
10.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1. 연말정산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
12.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 01. 근로소득

## 1) 의의

: 고용관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2) 고용관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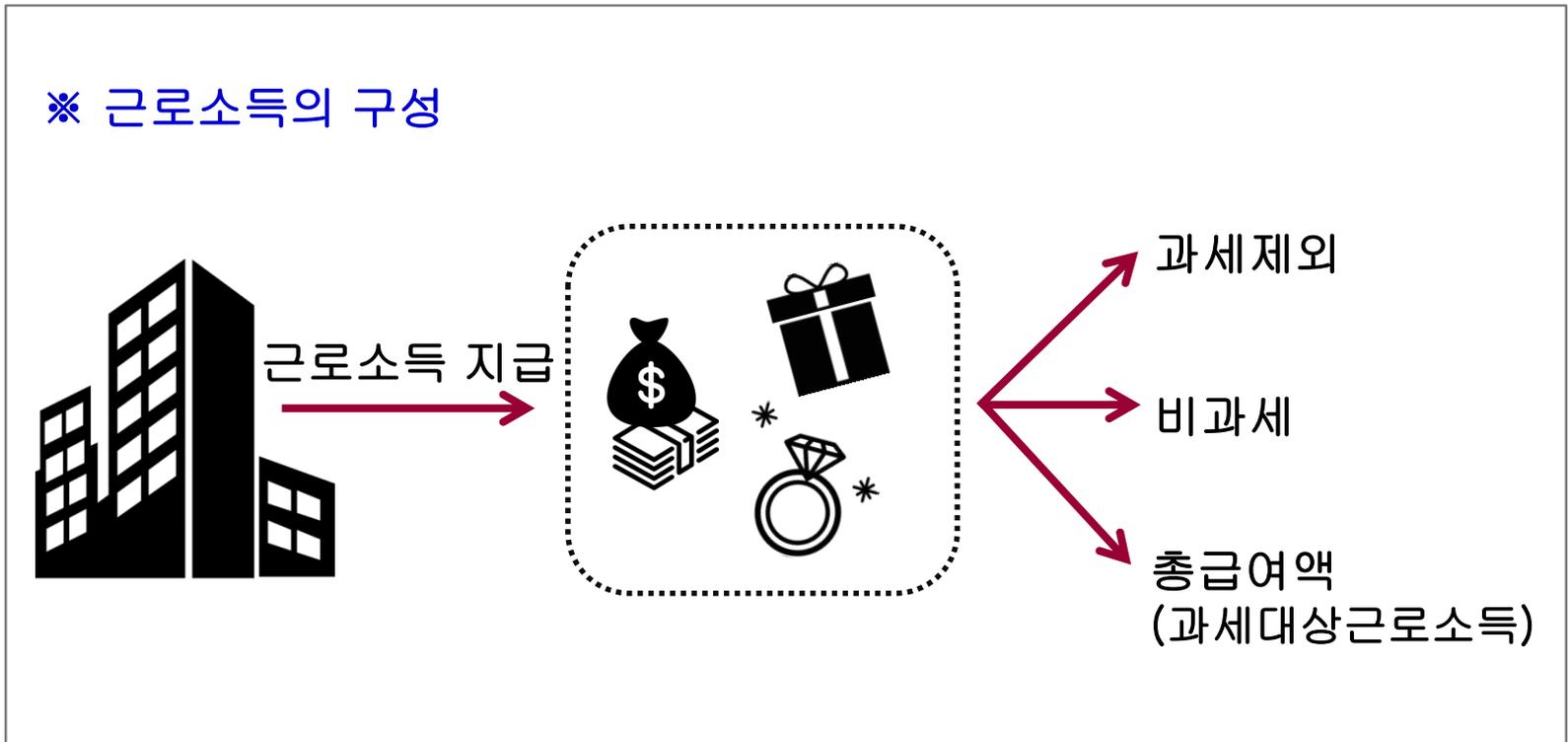
-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 구체적인 지시, 복무규정 준수 의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고용/근로 계약서 기준이 아님)
-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 01. 근로소득

## 3) 근로소득의 범위

: 현금 뿐만 아니라 현물, 선물, 상품권 등 싹~다!

※ 근로소득의 구성



# 01. 근로소득

## 4)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 인건비는 제공받는 자의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

- 소득세신고방법, 납부세액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의의	고용관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리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열거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
특징	종속성	독립적, 계속·반복적	일시·우발적 또는 타 소득과 중복규정 되어 있을 때 타 소득으로 먼저 분류	근로관계의 종료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말정산</li> <li>• 예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된 소득 외 다른 소득 존재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li> <li>• 예외: 연말정산 대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li> <li>• 예외: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퇴직소득 지급 시 신고</li> <li>• 예외: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산)</li> </ul>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없음

# 01. 근로소득

## 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세제외)

- ① 경조금
- ② 사택제공이익
-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건설공제회공제부금, 임원손해배상보험료 불입액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지급액
- ⑤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분~~

### ※ 근로소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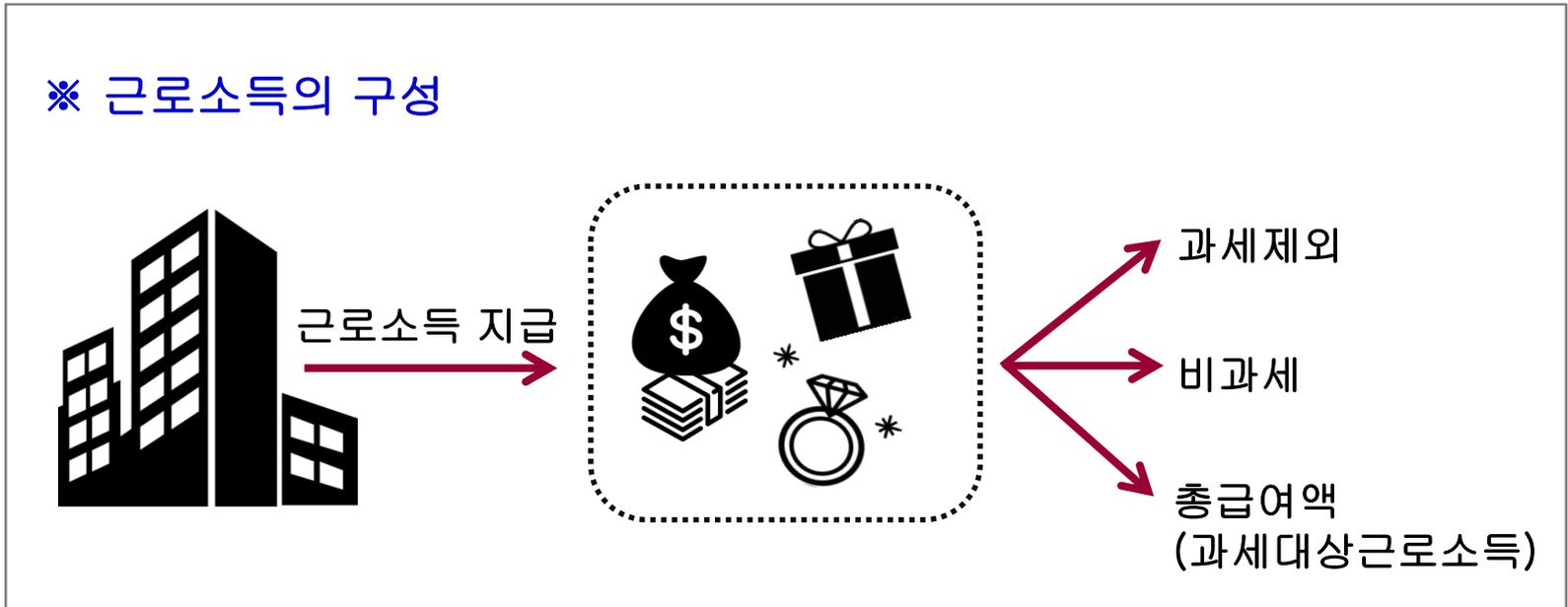
# 01. 근로소득

## 6)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나 과세 정책적인 목적상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 일반 비과세(소법12조3호)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령12)

### ※ 근로소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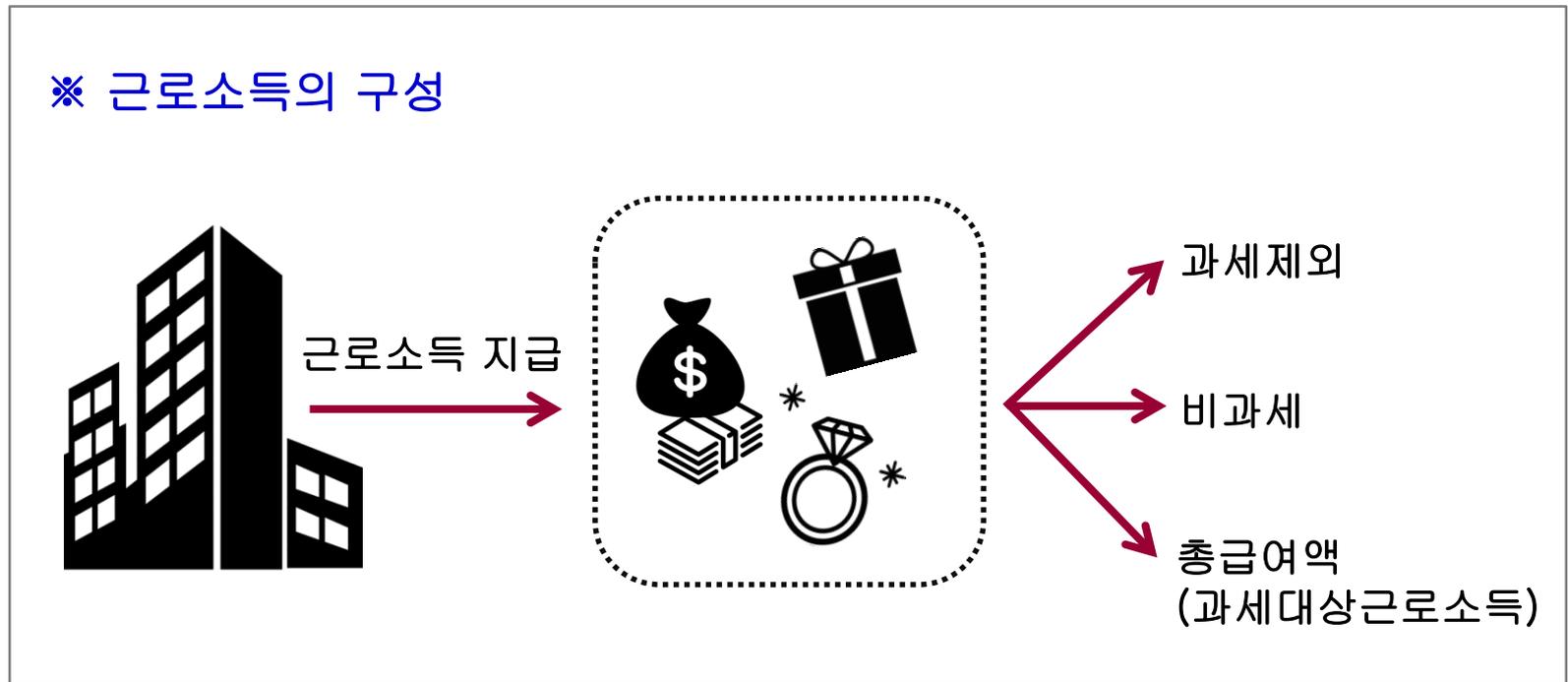


# 01. 근로소득

## 7)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자의 근로총소득에서 과세제외와 비과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라고도 함

### ※ 근로소득의 구성



# 06.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1) 대상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상용(일반)근로자(소법127①, 소법127②)
- 원천징수제외 대상 근로소득으로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소법150)

## 2) 방법

- 매월분의 급여액 등 일정금액을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수행  
(연중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수행)

# 08. 연말정산 시기

## 1)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 1월 귀속분 2월 지급  
- 2월 귀속분 2월 지급

## 2)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수행  
(중도퇴사, 근로소득 중도정산)
-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자료 반영 가능)

# 12.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실무자 대상 연말정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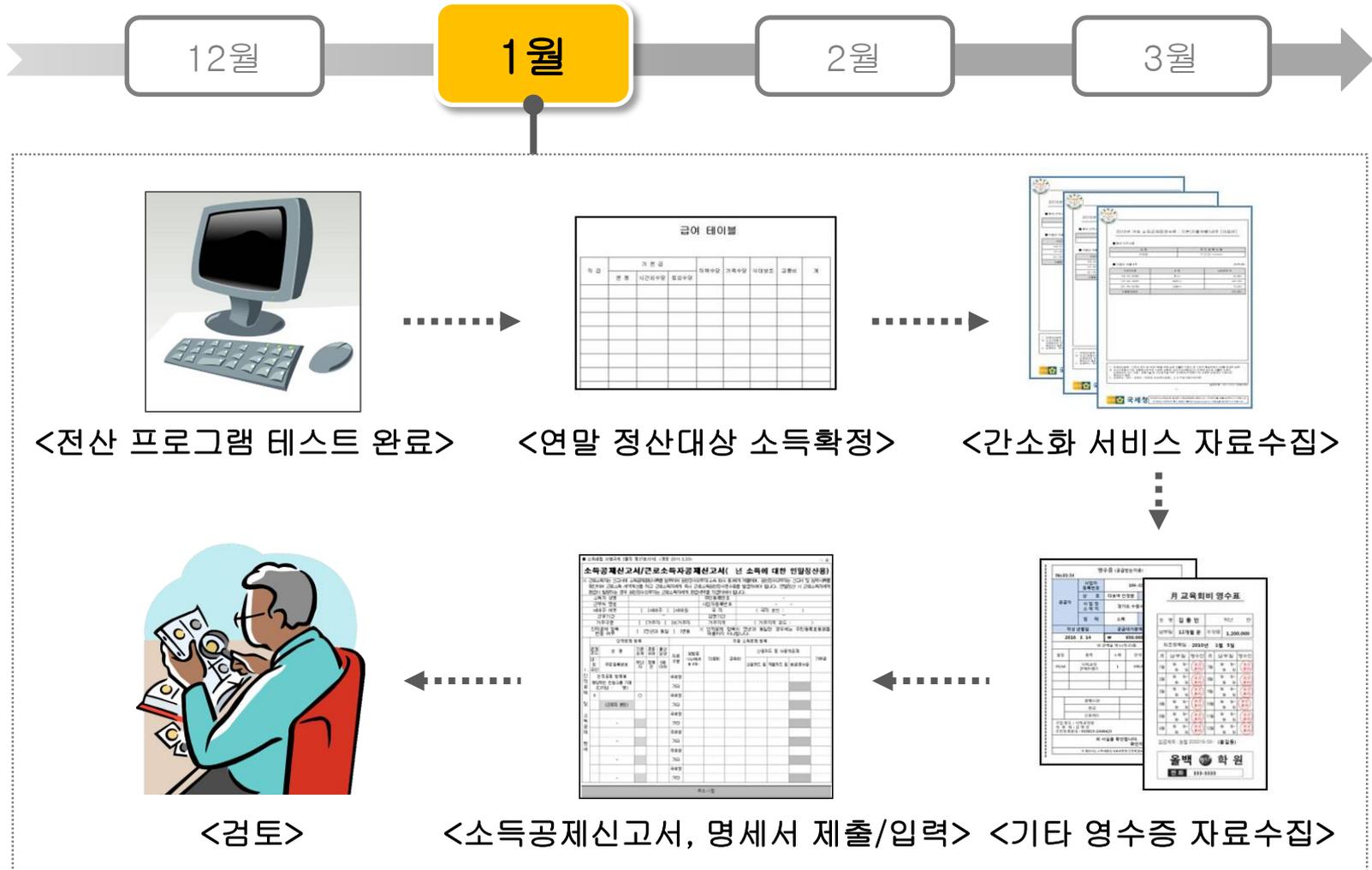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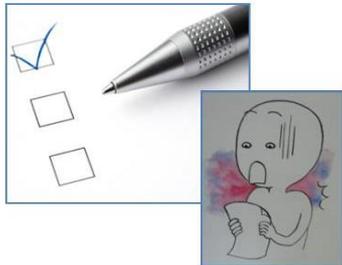


<사내 안내문 공지>

# 12.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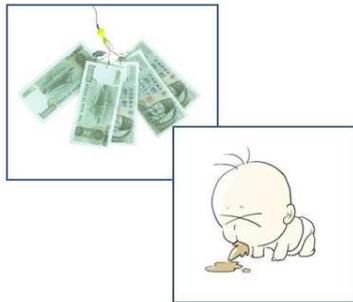
# 12.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검토 및 피드백>



<세액 계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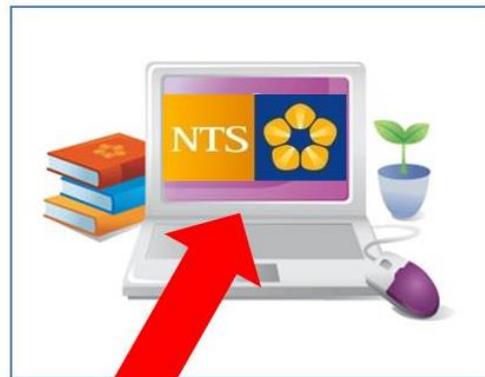


<환급세액 지급 또는 추가납부>

구분	월(원)	월(원)	월(원)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

# 12.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지금명세서 제출>

# III

## 근로소득금액 확정하기

01. 정기적,고정적 형태의 급여
02. 비정기적 형태의 급여
03. 복리후생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04. 조세 정책적 목적의 과세특례 및 감면
05.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 확정하기
06. 근로소득공제

# 05.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 확정하기



<근로제공으로 받은 모든 대가>

**과세세외**  
(경조금,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대상  
(야간근로수당, 자녀보육수당...)  
: 기재대상

**총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관리번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거주지역코드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종료퇴사2			
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②대표자(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소득자	⑥성 명 ⑧주소		⑦주민등록번호			
	구분	주(현)	증(전)	증(전)	⑩-1납세조합	합계
⑨근무처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⑫감면기간	~	~	~	~	~	~
⑬급여	여					
⑭상여	여					
⑮인정상여	여					
⑯-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⑯-2 우리스주조합인출금						
⑯-3						
⑯-4						
⑯-5						
⑯-6						
⑯-7						
⑯-8						
⑯-9						
⑯-10						
⑯-11						
⑯-12						
⑯-13						
⑯-14						
⑯-15						
⑯-16						
⑯-17						
⑯-18						
⑯-19						
⑯-20						
⑯-21						
⑰ 지정 비과세	Y22					
⑱ 비과세소득계						
⑳-1 감면소득계						

지급명세서 기재대상만...

# 06. 근로소득공제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 소요될 것이라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일정 금액

공제해주는 제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준다!**

## 1) 공제금액 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06. 근로소득공제

## 2) 공제적용 방법

- ①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없이 근로소득공제를 전액 적용
- ②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에 포함
- ④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2 쪽)

㉠총급여 (㉠,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1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미련저축 ㉪근로자주택미련저축
--	--

$$\begin{aligned}
 & \text{총 급여} \\
 & - \text{근로소득공제} \\
 \hline
 & = \text{근로소득금액}
 \end{aligned}$$

㉠총급여 (㉠,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 A.인적공제 제도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1)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공제대상자의 범위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	1인당 연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아래의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 B.인적공제 적용판정

## (2)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기준(소법53조④)

구 분		판정시기
원 칙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예외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 (3) 공제우선순위

“신청주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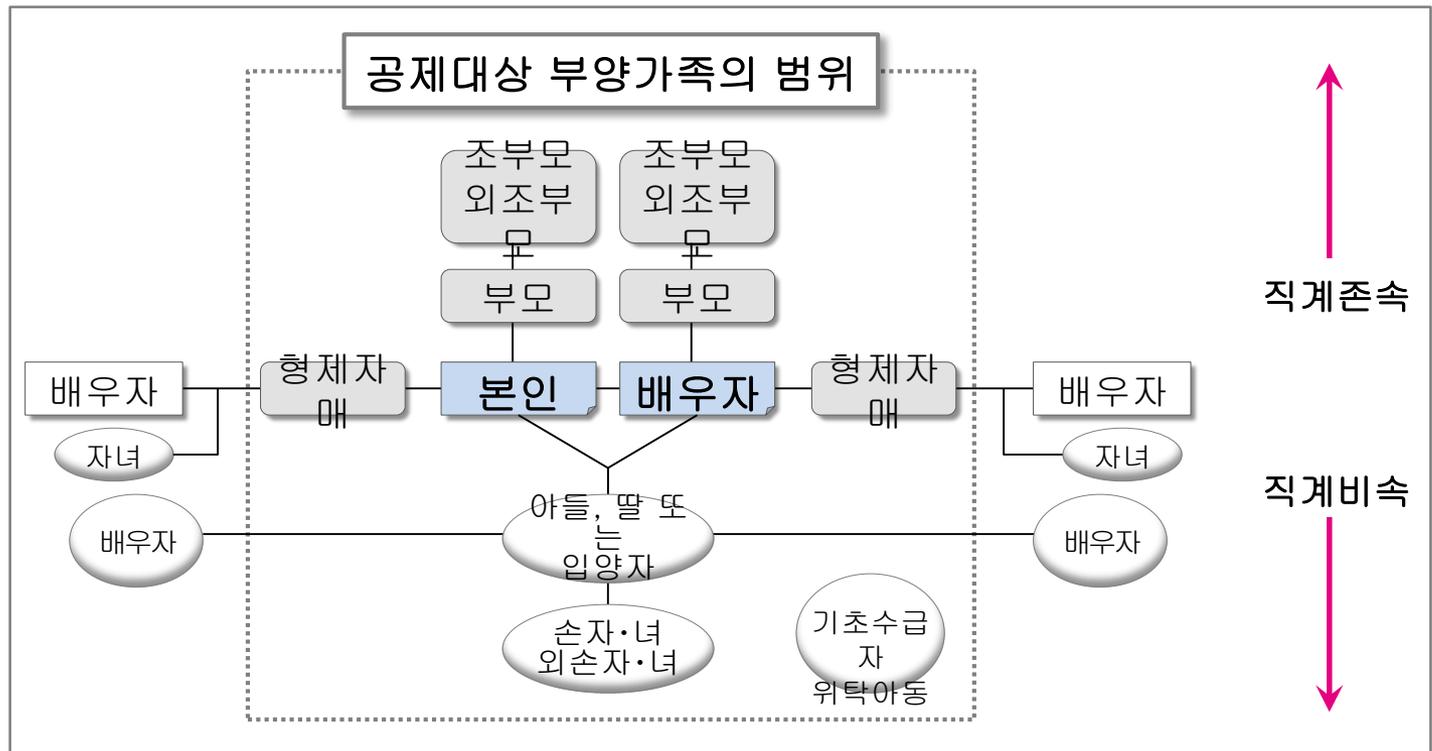
가족요건		코드	나이요건 (장애인은 불문)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0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3	없음		
직계비속·입양자		4.5	만 20세 이하 (1994.1.1 이후 출생)		
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그의 장애인배우자		5	없음		
직계 존속	본인직계 존속	1	만 6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속	2			
형제자매		6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 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 도 허용)	
기초수급자		7	없음		
위탁아동		8	만 18세 미만 (1997.1.1 이후 출생)	-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요약)

### (1) 가족요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2) 생계요건:(주민등록상)동거+경제적지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요건	생계요건		
	원칙	특례	
		주거형편상 별거	일시퇴거
본인			
배우자	-	-	-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	○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	○
위탁아동			

### ③ 원칙

- ✓ 거주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거주자본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이어야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2) 생계요건

#### ② 특례

✓ 주거형편상 별거 또는 취학·근무형편상 등의 일시 퇴거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주거형편상 별거

㉡ 일시퇴거 특례

일시퇴거사유	추가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취학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각 1부)
질병의 요양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상 형편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 형편	사업자등록증 사본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3) 나이요건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나이요건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없음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없음	만 18세 미만
-	1995.1.1 이후 출생자	1955.12.31 이 전 출생자	1995.1.1 이후 또는 1955.12.31 이전 출생자	-	1998.1.1 이 후 출생자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4)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text{연간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금액} \leq \text{연간 100만원}$$

#### 2015년 개정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허용('16.01.01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기타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나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의 초과한다면 초과액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소득이외에 타소득도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li><li>•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좌 동</li><li>•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li></ul>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4) 소득금액요건

#### ①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포함)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소득총액} - \text{비과세소득} - \text{분리과세대상소득} - \text{필요경비}$$

# 01. 기본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 (4) 소득금액요건

② 연간 소득금액요건 판정기준 : ㉠ + ㉡ + ㉢ ≤ 100만원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예시
㉠ 종합 소득 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li> </ul>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li> </ul>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임대료수입액 등) -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li> <li>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li> <li>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li> <li>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li> </ul>
	기타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li> </ul>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li> <li>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li> </ul>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퇴직금)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금이 100만원 이하</li> </ul>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li> <li>1세대 1주택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li> </ul>	

# 01. 기본공제

## ※ 근로소득금액 검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 개정 2015.5.13.>

(1 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부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달경산구분	계속근로1, 종료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 지 (주소)	② 대표 자(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	⑥ 성 명 ⑧ 주 소	⑦ 주 민 등 록 번 호				
I 근 무 차 별 수 득 명 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⑩-1납세조합	합 계
	③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 무 기 간	~	~	~	~	~
	⑫ 감 면 기 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⑯-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⑯-2 유리사주조합인출금					
⑯-3 임원퇴직소득금액제한조치액						
⑯-4						
⑯ 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특히, 신입사원, 휴직자인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 판정 시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값 위치

# 01. 기본공제

## ※ 기타소득금액 검토

귀속 연도		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19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 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③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 비과세 기타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 ☑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제외) ☑ 상금 및 부상    ☑ 광업권 등    ☑ 지역권 등    ☑ 주택임주지체상금 ☑ 원고료 등    ☑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지급 총액	⑬필요 경비	⑭소득 금액	⑮세율	원천징수세액				
연월일	연월					⑯소득세	⑰지방소득세	⑱농어촌특별세	⑲계	

부양가족의 기타소득금액 판정 시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값 위치

# 01. 기본공제

## ※ 연금소득금액 검토

※ 다른 소득은 없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⑭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요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 다른 소득은 없고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⑰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요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 ] 연금소득 지급 명세서(연말정산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공적연금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③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⑩귀속연도	부터	까지	⑪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금지급내역	⑫총연금수령액	⑬연금제외소득 (2001.12.31. 이전분)		⑭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⑮총연금액 (⑫-⑬-⑭)		
		정산명세							
		⑯총연금액 (=⑫)							
		⑰연금소득공제							
	⑱연금소득금액 (⑮-⑰)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앞 쪽)	
관리번호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사적연금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②법인(주)등록번호	④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퇴직시기		13.1.1 이전 [ ] 이후 [ ]	
		⑧주소				⑨연금계좌가입시기		13.3.1 이전 [ ] 이후 [ ]	
		⑩귀속연도	부터	까지	⑪연금외지급사유		[ ] 퇴직 [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 계해지 [ ] 일부인출 [ ] 연금수령한도초과		
	연금계좌지급내역	⑫계좌번호	⑬연금지급액	⑭연금수령한도액	⑮연금수령한도초과액 (⑬-⑭)	⑯연금소득	⑰외연금외지급	⑱연금외지급액 (⑰+⑱)	
	연금수령한도계산	⑲연금수령개시일	⑳연금수령기산연차	㉑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평가액		㉒연금수령연차	㉓연금수령한도 ((㉒/(11-㉓))×120%)		

# 01. 기본공제

## ※ 사업소득금액 검토

※ 연말정산 시점에는 알 수 없고 내년 5월에 가야 알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년도 신고분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판단하도록 안내)

관리번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일시입국용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국인 / 외국인 여 1 / 부 2
1 기본사항			계좌 계좌번호	계좌 계좌번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주소지 전화번호		5 사업장 전화번호	
6 유대전화	7 사업자등록번호		8 전자우편주소	
9 신고유형	10 신고유형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3 성실납세 14 성실신고확인 15 2년경장부 16 추계-단순계-전순계 17 일반납세 18 비사업자			
11 신고유형	12 신고유형 13 복식부기외무자 14 간접장부대상자 15 비사업자			
16 신고구분	17 신고구분 18 정기신고 19 추계신고 20 경정청구 21 기한후신고 22 추후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과신고 (2차원형 미단선 경우)			3 제과번호	
4 세무대리인 5 대리구분 6 대리구분 7 기장 8 조세 신고 9 확인			10 세무대리번호 11 관리번호 12 조세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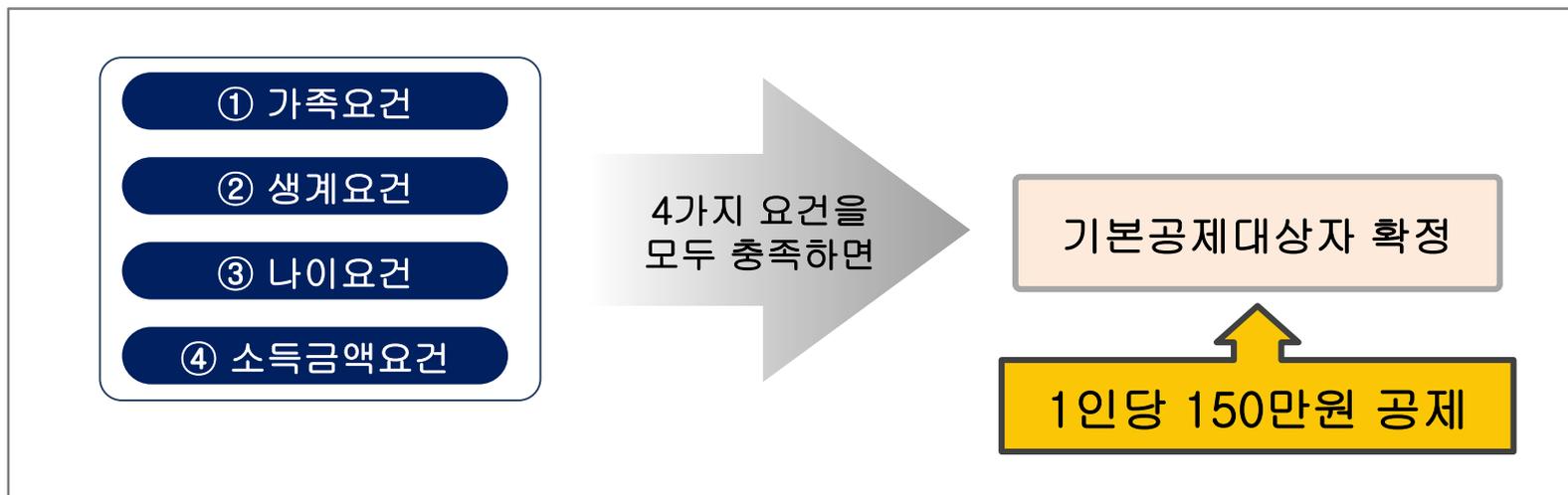
관리번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를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구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국인 / 외국인 거주지구코드
1 기본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등록번호	
4 상 호	5 주소		6 전자우편주소	
7 주소지 전화번호	8 사업장 전화번호		9 휴대전화번호	
10 신고유형	11 추계-단순계		12 신고유형 1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14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15 신고유형	16 신고유형 17 단선경비율(%)		18 신고구분 19 정기신고, 20 추계신고, 40 기한후신고	
2 환급금 계과신고			3 제과번호	
4 금융기관채신관서명			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 액		
1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2 단선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1 총수입금액 x 2 단선경비율(%)				
3 종합소득금액 : 1 - 2				
4 소득공제 : 소득공제항목(3 ~ 6)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01. 기본공제

## 2)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구 분	공제대상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12월 31일 이전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 3) 공제금액



# 01. 기본공제

## 4)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우선적용 순위

구분		우선 순위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자
2인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각각 신고한 경우(중복공제) 등	배우자	배우자공제를 받는 거주자 본인
	기타 부양가족	다음순서에 의함 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 연도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

## 02. 추가공제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 적용

구 분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금액
①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5.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③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④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 추가공제대상 판정시기

구 분	공제대상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 02. 추가공제

## 2) 추가공제 항목

### (1) 경로우대자공제

#### ①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 요건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1945.12.31 이전 출생자

#### ② 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연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단)

#### ③ 적용사례

㉠ 거주자 본인이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도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 가능

# 02. 추가공제

## 2) 추가공제 항목

### (2) 장애인공제

#### ①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 요건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등</li> <li>▪ 세법상 장애인(중증환자)</li> </ul>

#### ② 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연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단)

#### ③ 장애인 증명서류

구분	코드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상이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합시취급을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	첨단 의료기관

# 02. 추가공제

## 2) 추가공제 항목

### (2) 장애인공제

#### ④ 장애인 유형별 증빙서류를 통한 장애인 판단 적용사례 : 적합한 장애인 증빙서류



반드시 아래 내용이

-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1급~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1. 증명서 발급기관		①상 호	서울병원	②사업자등록번호	2 2 2 - 8 2 - 1 2 3 4 5
		③ 대표자(성명)	허 풍		
		④소 제 지	소주도 특허군 마시면 노우리 44번지 서울병원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성 명	김강호	⑥ 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⑦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영구 ■비영구 (2014. 1.부터 2015. 12까지)
		⑫장애 내용	제 3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p>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p><b>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b></p>					
<p>※ 작성방법: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p>					

# 02. 추가공제

## 2) 추가공제 항목

### (3) 부녀자공제

#### ① 공제대상 요건

구분	공제대상 요건	공제금액
남편이 있는 여성	여성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남편이 없는 여성 (미혼, 사별, 이혼, 사실혼)	여성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여성 본인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small>(*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small>	

#### ② 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남편, 부양가족 해당 유무 판단  
(연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단)

#### ③ 적용사례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 세대주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녀자공제를 적용
- ㉢ 세대주인 미혼여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02. 추가공제

## 2) 추가공제 항목

### (4) 한부모가족공제

#### ①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 요건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 당해연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여·부

당해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연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
△	X	O	X

-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의 적용범위 및 중복공제 배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그 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	

**V**

## **연금보험료공제 반영하기**

### **01. 연금보험료 공제**

# 01.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에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 금액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납부분 포함)	전액공제
공적연금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2) 공제적용 시기

해당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공제적용 시기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도
지역 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한 연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미납보험료	납부한 연도
소금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한 연도

# VI

## 소득 · 세액공제 둘러보기

01.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02.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비교

# 01. 항목별 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

항 목		항목별 공제대상자 요건			항목별 공제대상자의 범위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	-	-	○	×	×	×	×	×	×
	주택자금	-	-	-	○	×	×	×	×	×	×
	기부금공제(이월분)	○	○	○	○	○	○	○	○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	×	×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	○	×	×	×	×	×	×
	투자조합출자 등	-	-	-	○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	-	○	×	×	×	×	×	×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	-	-	○	×	×	×	×	×	×
	장기집합투자저축	-	-	-	○	×	×	×	×	×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등)	○	○	○	○	○	○	○	○	○	○
	의료비	○	×	×	○	○	○	○	○	○	○
	교육비	○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월세 세액공제		-	-	-	○	×	×	×	×	×	×

## 02. 공제대상 지출증빙서류

항 목		본인명의 증빙서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명의 증빙서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경우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	×	
	주택 자금	주택임차원리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기부금공제 (’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분)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	×
	장기집합투자저축		○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등)		○
의료비		○	○	
교육비		○	○	
기부금		○	○	
월세 세액공제		○	×	

# 03. 지출시기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항 목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비용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	×	
	주택 자금	주택임차원리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기부금공제 (’13년 이전 지출분 중 이월분)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	○
	장기집합투자저축		○	×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보장성보험료 등)		○
의료비		○	×	
교육비		○	×	
기부금		○	○	
월세 세액공제		○	×	

# VII

## 특별소득공제 반영하기

01. 보험료공제

04. 주택자금공제\_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 01.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부담분”을 보험료 공제함

## 1) 공제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제공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li> <li>•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li> </ul> <p>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 는 것 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하 는 것 임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사 또는 입사전 등 근로제공기간 이외에 납부한 보험료</li> <li>•부양가족 부과분에 대해 납부한 건강보험료</li> <li>•과세연도 종류일 현재 미납한 보험료</li> </ul>

# 01. 보험료공제

## 2) 공제시기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법52①).

구분	공제시기	공제금액
미납분 일시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연도	근로자부담분 전액
선납한 경우	실제 납부(선납)한 연도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정산)한 연도	
전년분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원천공제한 날이 속한 연도	

주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를 포함

# 04.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택임차를 위해 소요된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취득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및 월세지급액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세액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제도

## 주택취득 이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분야

### 무주택자 주거지원 단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세금·월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주택취득 이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차입금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 04. 주택자금공제

## ※ 주택임차 및 취득의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해주는 조세지원제도



# 04. 주택자금공제

## 1) 주택자금공제

구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	
공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로서 연도 말 현재 1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li> </ul>
공제 요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규모제한없음)</li> </ul>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차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간 차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 차입금</li> </ul>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 40%		이자상환액

# 04. 주택자금공제

## 1) 주택자금공제

### (1) 주요 용어 정리

#### ① 세대와 세대주

- ✓ 세대구성원
  - 근로자와 그 배우자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 세대주 판정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

#### ② 주택

- ✓ 『주택법』 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 ✓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 → 국민주택규모(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li><li>• 주거용 오피스텔(2013.08.13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주택규모 제한없음)</li></ul>

# 04. 주택자금공제\_임차차입금

##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공제요건 : 증빙서류를 활용한 공제요건 검토요령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m
건물구조	용도	면적	면적	m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차입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	원정은 계약서의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장( )
계약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선불로, ■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 2 조 (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임대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 3 조 ( 용도변경 및 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입연체액이 2기의 차입액에 달하거나 제3조의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 주민등록표 ( 등 본 )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 : -3001  
2014년 1월 15일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장

주거	김은철 (金銀哲)	세대구성	본가세대구성
가계	은철의 본인	및 일자	1995-09-27
주소 (동/반)			전입일 / 변동일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아파트 201호			2011-07-30   2011-07-30
== 이 하 여 백 ==			전입
주거	성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	호주성명
인	김은철 (金銀哲) 620227-1434561		
	장은영 (張恩英) 650926-2476724		
	홍영숙 (弘英淑) 430501-2433324		
	김영인 (金永仁) 930815-1048423		
	김동인 (金同仁) 951225-1048433		
== 이 하 여 백 ==			

주택규모

입주일

전입일

# 04. 주택자금공제\_임차차입금

##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4) 주택임차차입금 서류 검토요령

#### <간소화서비스 자료>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명	김은철	주민등록번호	820227-1*****
----	-----	--------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주)우리은행	201-81-02***	1320200122215	2013-08-01	399,960
합계				399,96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수주도	특허군	미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토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면적	84㎡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거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보증금	금	원정 (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영수증 ( )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입(임대료)	금	원정은 □선불로, ■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 2 조 (콘슈가)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7월 29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권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입연체율이 2기의 차입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1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원칙)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예외)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주민등록표

이 등본은 세대원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김강동 ☎ : 0501-564-8001  
2015년 1월 15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미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성명
1	본인	김은철	820227-1434581	2013-07-30	김은철
2	처	장은영	850926-2476724	2013-07-30	장은영
3	모	홍영숙	430501-2433324		홍영숙
4	자	김영민	930815-1043423		김영민
5	자	김동민	951225-1048433		김동민

2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일 것

3 1) 대출일이 전입일(입주일)과 3개월 이내일 것  
2)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2015년도 상환한 금액일 것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구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보통연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	주택자금 공제액
		충(전)근무지	주(원)근무지	충(전)근무지	주(원)근무지	보통연금	특별연금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거주자 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2011년 이전	15년 미만	30년 이상	고정금리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2012년 이후	15년 이상	상환 대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세대로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

### (1) 공제요건

구분			'14년 이후 차입분	'13년 이전 차입분
① 세대주 요건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일용근로자 제외)	
② 주택 요건	주택 취득 기준	주택규모	주택(규모 제한없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가격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 기준	취득시점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취득 당시 무주택
		연 중	-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
		연말 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 공제요건

#### ① 세대주 요건

- ✓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세대주(=우리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
- ✓ 우리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우리 근로자가 주택소유 및 차입금 채무자인 경우)
- ✓ 실제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인 우리 근로자도

구분	공제요건
우리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명의자가 우리근로자일 것</li><li>▪ 차입금채무자도 우리근로자일 것</li></ul>
우리 근로자가 세대구성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명의자가 우리근로자일 것</li><li>▪ 차입금채무자도 우리근로자일 것</li><li>▪ 우리근로자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li><li>▪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를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li></ul>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 공제요건

#### ③ 차입금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 차입금 채무자가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일 것

#### ※ 예외사항

-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적용
- Ⓑ 2000.10.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3월 이내 차입요건 없음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 차입금 요건 검토-1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단위: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환기간	상환기간 연수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 C 은행 (201-81-77***)	구입자금 (거치, 구입)	2008-02-24 ~ 2028-02-24	20년	2008-02-04	2008-02-24	9,766,219	9,766,219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8년 2월 4일 제 77899호	2008년 2월 3일 매매	소유자 김은철 620227-14354586 소주도 독하군 누우면 뽕으리 401번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848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8년 2월 24일 제 67005호	2008년 2월 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40,000,000 채무자 김은철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번지 근저당권자 한국 C은행 110121-0034211 (마시면지점)

-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2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3 우리 근로자 = 차입금채무자 = 주택소유자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 차입금 요건 검토-2

주택소유자	차입자(채무자)	공제 여부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O
	부양가족	X
	공동차입	채무비율로 안분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X
	부양가족	
	공동차입	
공동명의	근로자 본인	O
	부양가족	X
	공동차입	채무비율로 안분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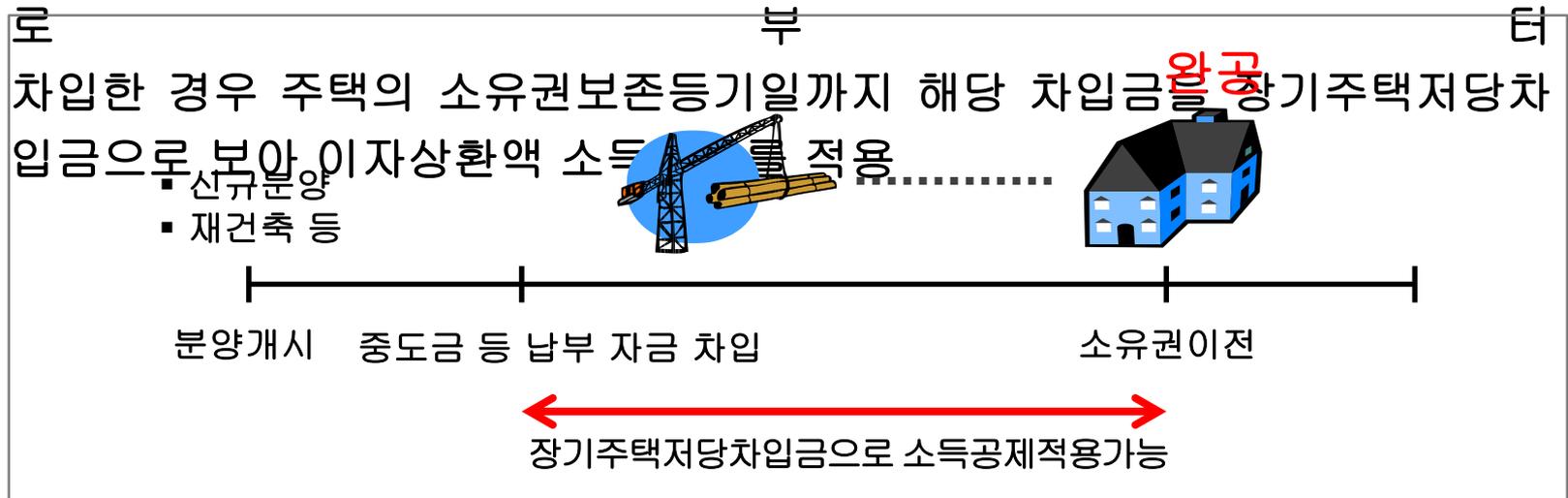
## ※ 차입시기별 공제 요건 요약

공제요건		'03.12.31 이전 차입분	'04.1.1~ '05.12.31 차입분	'06.1.1~ '07.12.31 차입분	'08.1.1~ '13.12.31 차입분	'14.01.01 이후 차입분	'15.01.01 이후 차입분	
세대주 요건	연말 현재 세대주	○	○	○	○	○	○	
주택 요건	① 주택규모기준	○	○	○	○	×	×	
	② 주택가격기준	×	×	○	○	○	○	
	③ 주택보유기준	×	×	○	○	○	○	
차입금 요건	① 상환 기간	10년 이상	×	×	×	×	△	
		15년 이상	×	○	○	○	○	
	② 소유권이전(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	○	○	○	○	○
	③ 차입금채무자 = 주택소유자		○	○	○	○	○	○

# 04. 주택자금공제-분양권

## 4)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로서 가격이 4억원(2013년 이전분은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 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

##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 중도상환(일시상환)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에 해당 주택 매매 등의 사유로 차입금을 일시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일시 중도상환시점에 상환기간이 15년 을 경 과

## 7) 공제금액 및 시기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환액

구분	공제시기	공제 제외
일반적인 경우	지급한 연도	• 원금상환분 • 연체에 대한 추가 가산이자
미납이자를 일시 납부한 경우	지급(납부)한 연도	
이자를 미리 선납한 경우	지급(선납)한 연도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_2013년 이전

## 11) 소득공제신고서 검토요령

<간소화서비스 자료>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대출 종류	상환기간	상환기간 연수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9) C 은행 (201-81-77***)	구입 자금 (거치, 구입)	2014-02-24 ~ 2034-02-24	20년	2014-02-04	2014-02-24	9,766,219	9,766,219

1 차입자 및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 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야 함)

2 해당주택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차입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4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입력  
(공제대상 차입금은 15년 이상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건물등기부등본>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4년 02월 01일	제2종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0.3690㎡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14년 2월 4일 제 77899호	2008년 2월 3일 매매	소유자 김은철 620227-14354586 소주도 독하군 누유면 뽕거리 401번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848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설정	2014년 2월 24일 제 67005호	2014년 2월 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 채무자 김은철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번지 근저당권자 한국 C은행 110121-0034211 (마시면지점)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I 별 공 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가주자 차입	관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3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상환 대출 가다 대출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04. 주택자금공제\_저당차입금\_2014년 이후

## 11) 소득공제신고서 검토요령

<간소화서비스 자료>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 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환기간	상환기간 연수	주택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 C 은행 (201-81-77***)	구입자금 (거치, 구입)	2008-02-24 ~ 2028-02-24	20년	2008-02-04	2008-02-24	9,766,219	9,766,219

1 차입자 및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 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야 함)

2 저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 차입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20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요건이 없음)

4 구분하여 입력  
(공제대상 차입금은 15년 이상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건물등기부등본>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1	2008년 02월 01일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0.3690㎡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집수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2008년 2월 4일 제 77899호	2008년 2월 3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자 김은철 620227-14354586  
소주도 독하군 누우면 뽕거리 401번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848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집수	등기원인
	근저당설정	2008년 2월 24일 제 67005호	2008년 2월 24일 선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240,000,000  
채무자 김은철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거리 220-1번지 근저당권자 한국 C은행 110121-0034211 (마시면지점)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월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공제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30년 이상 고령관리·피복지상환 대출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VIII

## 그 밖의 소득공제 반영하기

01. 개인연금저축공제
0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4.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6.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0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08.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0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01. 개인연금저축공제

## 1) 개요

구분	개인연금저축
가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12.31 이전</li> </ul>
공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본인=가입자=만기수익자</li> </ul>
연금저축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소정 금융기관이 취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li> <li>2) 불입기간 10년 이상</li> <li>3)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 불입</li> <li>4)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수령할 것</li> </ol> </li> </ul>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과 ②중 적은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간불입액X40%</li> <li>② 연 72만원</li> </ol> </li> </ul>
연금수령 시 과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li> </ul>

## 02.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1) 개요 : 일명 “노란우산공제” 제도

구분		세 부 범 위
가입대상자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범위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경우 50명 미만 ② ‘①’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기업으로서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10명 미만 ② ‘①’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공제금액		Min [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 300만원 ]

### 2) 공제시기 및 제출서류

구분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	임·직원 (입사전에 가입했던 경우)
공제시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서비스자료 (동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통장사본도 가능)		

#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구분	공제요건		
		2009.12.31 이전 가입분	2010.1.1 이후 가입분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1) 청약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현재 세대주</li> <li>국민주택규모</li> <li>주택 1채 보유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현재 세대주</li> <li>연도 중 무주택</li> </ul>	
	(2) 주택청약 종합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현재 세대주</li> <li>연도 중 무주택</li> <li>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시 공제적용</li> </ul>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현재 세대주</li> <li>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li> <li>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 허용</li> </ul>	- (상품폐지)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한도	
			'14.12.31 이전 가입분	'15.1.1 이후 가입분
	(1) 청약저축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연 24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연 120만원	-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		

#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검토

<간소화서비스 자료>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취득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 계약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 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주) C은행 (201-81-02***)	161122451711 1	주택청약종합저축	FREE저금	2013-1-20	1,200,000
합계					1,200,000

1.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 것

2. 청약저축의 경우  
- 2014년 중 무주택일 것  
(단, 2009.12.31 이전 가입분만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 2014년 중 무주택일 것  
-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한 경우일 것

3. 저축상품별 한도 내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① 상호	(주)씨에프오아카데미	② 사업자등록번호	220-86-70083	③ 성명	김은철
④ 주민등록번호	620227-1434561	⑤ 주소	소주도 특하군 마서면 똥가리 220-1 구도아파트 201호 (전화번호 : 222-2222)	⑥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 PMK빌딩 (전화번호 : 501-2322)
1. 인적사항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C은행	161122451711	1,200,000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IV.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2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3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04.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확대를 위해 거주자 개인이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액 등의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공제금액	공제한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출자·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2013.12.31 이전, 40%)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 출자금액을 동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20%~100%	
④ 벤처기업에 투자		

출자·투자금액	투자·출자시기에 따른 소득공제율			
	2012년 출자·투자분	2013년 출자·투자분	2014년 출자·투자분	2015년 출자·투자분
1,500만원 이하	20%	30%	50%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30%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등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1) 적용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과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입양자 포함)

공제대상기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근로제공기간	○	○	무관	○

형제자매·기초수급자·위탁아동·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 받은 것 포함)에 기재된 금액
- ③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①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 ② 현금서비스 금액 및 사용이 취소된 금액
- ③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⑥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각종 보험 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⑦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⑧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및 도로통행료
- ⑨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 ⑩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⑪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⑫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지급한 사용료·수수료 등
- ㉡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사용료·수수료 등
- ㉢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 ⑬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소득세법상 소득·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

구분		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	X
보험료		○	X
의료비		○	○
기부금		○	X
교육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	○
	교복구입비	○	○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4) 적용방법

### (1) 근로소득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된 금액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사 전 및 퇴사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li> </ul>

### (2)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나이요건 불문) 명의의 사용금액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li> <li>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li>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li>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ul>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사용자 판단기준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 기준(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4) 적용방법

### (3)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이용요금</li> <li>•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입장료,</li> <li>• 경기장 사용료, 행정재산 임대료</li> <li>•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li>• 공기청정기·정수기렌탈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등</li> <li>•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명의신용카드 사용금액</li> <li>• 가스료·자동차렌트료·아파트관리비</li> <li>•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수강료</li> <li>• 법인경비를 근로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li> <li>•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li> <li>• 상품권 구입비</li> </ul>

## 5) 공제시기

구분	공제시기
일반적인 경우	1.1~12.31까지 사용한 금액의 해당연도
할부로 구입한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6)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①과 ②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작은 금액(㉠+㉡+㉢-㉣+㉤, 연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대중교통전통시장사용분 × 30%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30%

㉢ ~~신용카드사용분(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6)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①과 ②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text{Min}(\text{㉠} + \text{㉡} + \text{㉢} - \text{㉣} + \text{㉤}, \text{연 } 300\text{만원, 총급여액의 } 20\%)$

•근로자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 ① + ②

㉣ 근로자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① '15년도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

: [ '15년도 상반기(1월~6월) 근로자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13년 근로자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50%) ] × 10%

\* '14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3년도 사용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②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

: [ '15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자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14년 근로자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분×50%) ] × 20%

\* '15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4년도 사용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6)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①과 ②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textcircled{2} \text{ 추가공제} = \textcircled{㉠} + \textcircled{㉡}$$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초과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금액은 “0”

㉠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금액

$$= \text{Min}(\text{한도초과금액}, \text{전통시장사용분} \times 30\%, \text{연 } 100\text{만원})$$

㉡ 대중교통이용분 추가공제금액

$$= \text{Min} \{ (\text{한도초과금액} - \textcircled{㉠}\text{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금액}), \text{대중교통이용분} \times 30\%, \text{연 } 100\text{만원} \}$$

# 06.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 대상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후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범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 단,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위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소득공제대상 금액 = Min출연금액, 400만원)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를 제출

# 0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 대상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①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금액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text{소득공제대상금액} = (\text{직전연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text{당해연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times 50\%$

## ※ 임금반납(포기)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가?

회사가 인건비로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반납하는 경우는 “임금감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08.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임대인(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전세난에 따른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주인 보유의 임대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지원제도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를 임차인으로 둔 집주인(거주자)
공제요건	임대인 요건	보유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임차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일 것</li> <li>• 직전연도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li> <li>•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li> </ul>
	차입금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총액은 2억(수도권 3억)이하이어야 함</li> <li>• 입주일(갱신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li> <li>•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li> </ul>
공제금액		이자상환액 × 40% (연 300만원 한도)

# 0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해주는 조세지원제도이다.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 대상자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	•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대상저축(펀드)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서 계약기간내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 × 40% (연 240만원 한도)
제출 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IX

## 소득공제 종합한도 반영하기

01. 개요
02.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03.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농어촌특별세

# 0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항목

- (1)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3) 주택마련저축공제
- (4)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14년 개인의 벤처조합·벤처기업 투자분 제외)
-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6) 우리사주조합출자등의 소득공제
-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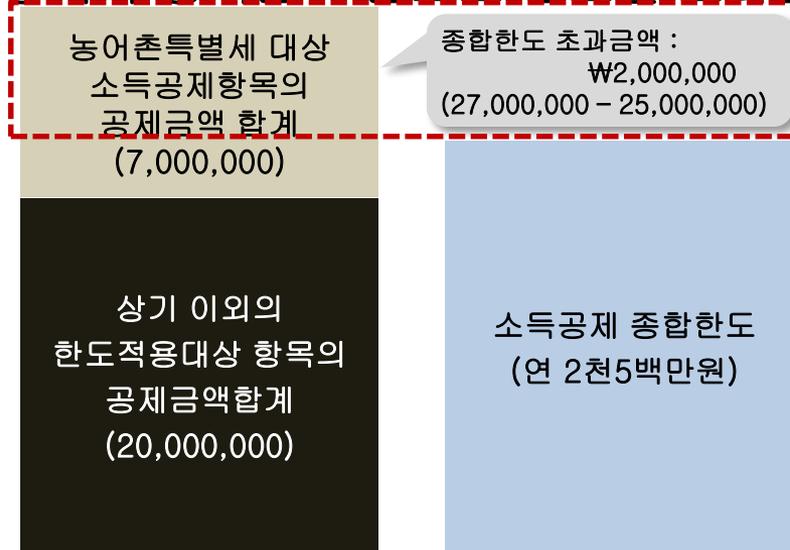
		구분	종합한도 적용 여·부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부금	이월액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13년 출자·투자분	○
			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분	○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목돈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02.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농어촌 특별세

### 1)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공제 배제 순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합계액이 소득공제한도 (연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항목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의 공제금액 → 이외의 소득

공제항목의 공제금액 순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항목들의 공제금액 합계액 이 소득공제한도(연 2천 5백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항목(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 X.

## 근로소득세액징수(환급)세액확정하기

01. 산출세액
02. 세액공제 · 감면

# 01. 산출세액

## 1) 산출세액 계산구조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가산법	간편법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의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의 38% - 1,940만원

## 02. 세액공제 · 감면

### 1) 세액감면

구분	감면대상	관련근거
(1) 정부간 협약에 의한 감면	정부간 협약에 따른 파견외국인이 받는 급여	소법 59의 2
(2)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18조
(3) 외국인교수·교사 세액감면	외국인 교수(교사)가 국내 교육기관등에서 강의·용역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조세조약
(4)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가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30조

## 02. 세액공제 · 감면

### 1) 세액감면

####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감면대상자

공제요건	2013.12.31. 이전 취업	2014.01.01 이후 취업
감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li><li>•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자</li><li>• 장애인</li></ul>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소득세의 100% 감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소득세의 50% 감면</li></ul>
감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li></ul>	
감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li></ul>	
감면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면부적격자의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105 추징</li></ul>	

# XI.

## 세액공제

01. 세액공제 개요
02. 근로소득세액공제
03. 자녀세액공제
04. 연금계좌세액공제
05. 특별세액공제
09. 월세 세액공제
10. 기납부세액
11. 농어촌특별세
12. 지방소득세

# 01. 세액공제 개요

종류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공제한도
1)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74만원(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
		130만원 초과	71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2)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2명 이하 : 1명당 각각 15만원 세액공제</li> <li>•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li> </ul>		
	6세이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6세 이하 자녀수 - 1명) × 15만원</li> </ul>		
	출산·입양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출산·입양한 자녀 :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li> </ul>		
3)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 15%(12%)**</li> <li>    * Min{ [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 ] , 연 700만원 }</li> <li>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적용</li> </ul>		
4)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2%(15%*)</li> <li>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적용</li> </ul>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li> <li>    * 총급여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li> <li>    * 교육비 지출액 중 공제한도 내 금액을 말함</li> </ul>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15%(3천만원 초과금액은 25%)**</li> <li>    * 기부금별 공제한도 금액을 말함</li> <li>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곱한 금액으로 함</li> </ul>		
5) 납세조합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의 10%</li> </ul>		
6)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30%</li> </ul>		
7)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①, ②)=①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총합소득 금액)</li> </ul>		
8) 월세액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액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li> <li>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li> </ul>		

## 02. 근로소득세액공제

### 1)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공제한도

#### (1)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계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 71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한도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text{Max}[(74\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3,300\text{만원}) \times 0.008), 66\text{만원}]$
7,000만원 초과	• $\text{Max}[(66\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7,000\text{만원}) \times 0.5), 50\text{만원}]$

# 03. 자녀세액공제

## 1)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공제대상 자녀의 범위	기존공제대상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제세액	자녀 수	공제세액
	2명 이하	1명당 15만원(2명의 경우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자녀수 - 2명) × 30만원

## 2) 공제대상

사용자 범위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공제세액	없음	만 20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위탁아동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만 18세 미만(1998.1.1 이후 출생)	

# 03-1.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 1) 개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09.01.01 이후 출생한 자녀로서 만 6세이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가 2명 이상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6세이하 자녀의 범위	09.01.0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
공제세액	(6세 이하 자녀 수 - 1명) × 15만원

## 2)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09.01.0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이다(소법59의2①).

따라서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03-2. 출산 · 입양 세액공제

### 1) 개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15.01.01 이후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자녀(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당 30만원을 일정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대상자	'15.01.01 이후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
공제세액	출산·입양신고한 자녀 수 × 30만원

### 2)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중 '15.01.01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등을 말한다(소법59의2③).

따라서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04. 연금계좌세액공제

## 1) 개요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총 급여액 5,500만원 한도

이하인 경우 **기본 15%**의 **12%**를 공한 금액을 세액공제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주1)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주2)· 과학기술인공제주3)에 납입한 금액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 Min 【Min(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2% (또는 15%)

## 2) 공제대상

구분		세부내용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2001.1.1. 이후 가입분에 한함)
	퇴직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 04. 연금계좌세액공제

##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 연금계좌 초과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특례
  - 근로자 김대박씨는 '14년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으로서 연말정산시 400만원 연금저축공제를 받았으나, '15년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한 경우 전년도('14년도)에 초과납입한 금액에 전환신청을 하는 경우 '15년 연말정산시 총 300만원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05. 특별세액공제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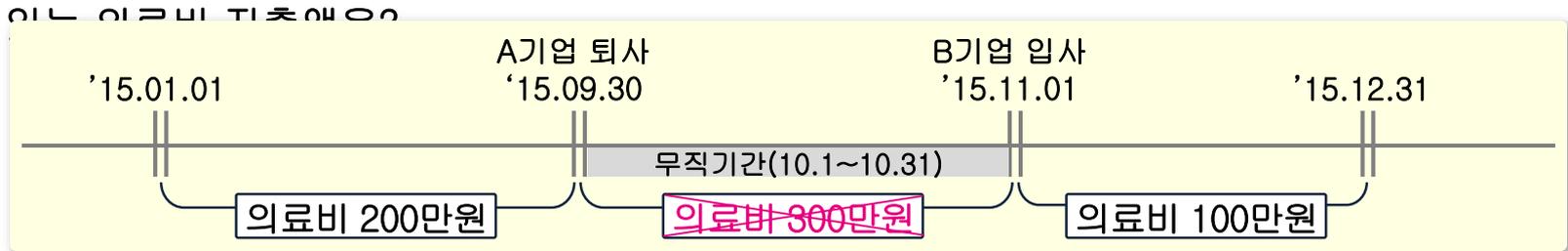
구분		대상	공제대상 금액한도	세액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생명·상해보험료 등)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		15%		
의료비	본인·만65세이상자·장애인	• 치료비·의약품구입비·의료기기·보청기·안경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등	한도없음	15%		
	그 밖의 부양가족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 700만원			
교육비	일반교육비	취학전아동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1명당 300만원	15%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도서구입대, 교복구입비(중·고생에 한함)			
		대학생	• 대학교·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수업료 등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한도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장애인 재활교육비	한도없음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부	전액	100/110	
					10만원 초과	15%(25%)
	법정기부금	• 국가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		15%(25%)		
	우리사주조합	•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15%(25%)		
	종교단체	• 사회복지·자선·학술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 05. 특별세액공제

## 2) 공제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

항 목	공제대상자 요건			공제대상자의 범위						
	생계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 속임양 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기초 수급자
보장성보험료	○	○	○	○	○	○	○	○	○	○
의료비	○	×	×	○	○	○	○	○	○	○
교육비	○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 아래와 같이 당해연도에 이직한 근로자가 '15년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가 600만원일 경우 공제받을 수



☞ 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을 제외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200만원 + 100만원)이 공제

대상이며, 이 공제대상 의료비 중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 05-1. 보험료세액공제

## 1) 개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 제공기간  
에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보험료(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2%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대상기간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의 충족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b>근로제공기간 지출분</b>		○	○	○	○

# 05-1.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제공기간에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보험료(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1) 공제대상자

공제대상기간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의 충족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	○	○	○

# 05-1. 보험료세액공제

## 2) 공제대상 보험료

### (2)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사례

① 보장성 보험료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내 근로자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에 납입한 보험료

②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내 장애인이 근로자본인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료</li><li>•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 공제가 가능</li><li>• 사용자가 대납한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 가산한 후 보험료공제 가능</li><li>•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문의 보험료로 총당한 경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li><li>•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출생 이후부터는 가능)</li><li>• 근로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와 함께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료</li><li>•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li></ul>

# 05-2. 의료비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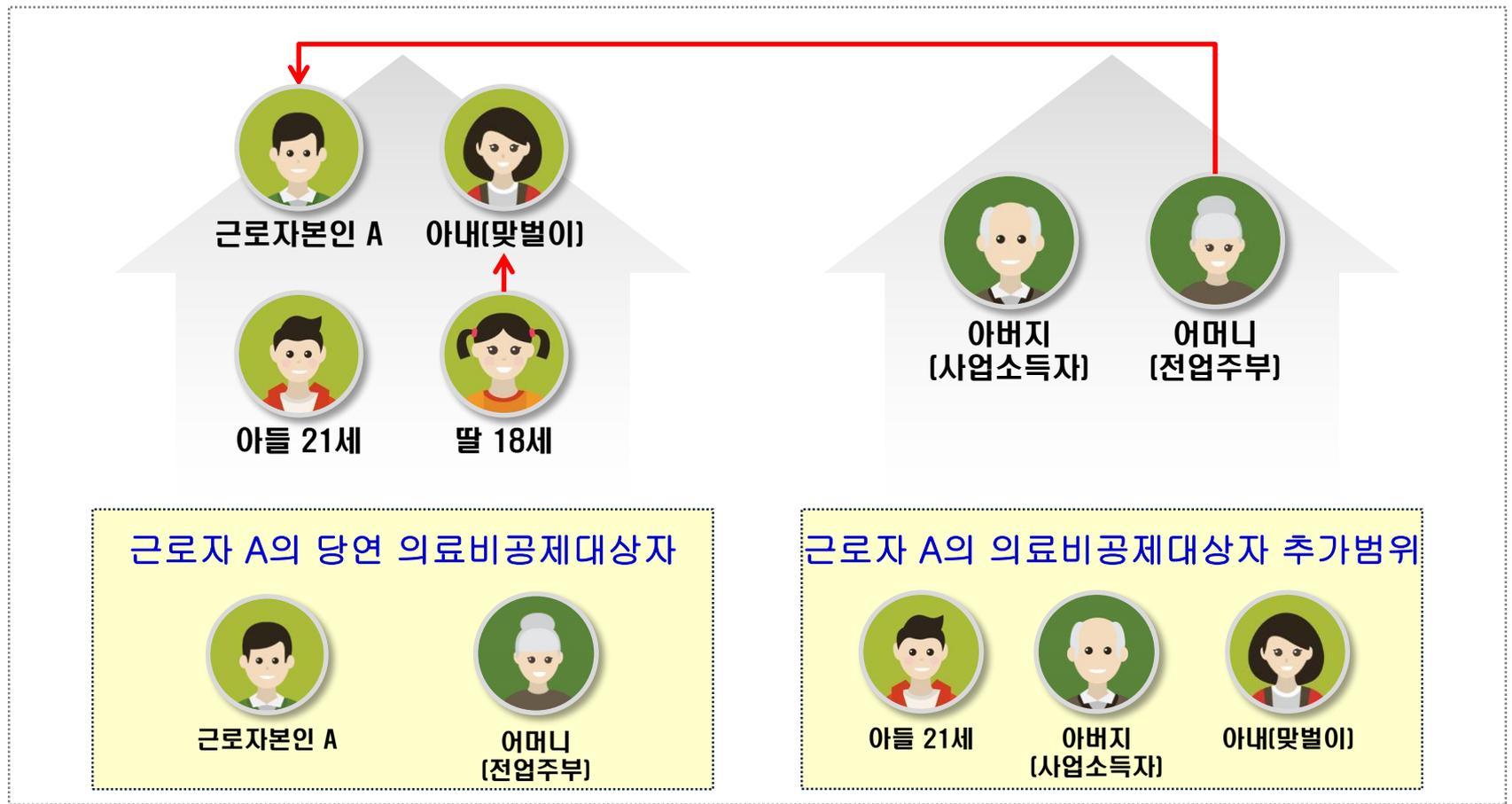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을 곱 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1)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기간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의 충족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	○	무관	무관
공제대상자	생계요건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무조건 충족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별도세대) 인정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위탁아동	(일시퇴거 인정)			

# 05-2. 의료비세액공제

## ※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자 판단



# 05-2. 의료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기관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li> <li>•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li> <li>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li> <li>3.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li> <li>•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li> <li>•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li> <li>• 임플란트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li> <li>•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li> <li>• 의료기관에 지출한 시력교정·근시교정시술비</li> <li>• 치료목적의 모발이식, 화상흉터제거 및 청각장애자의 귀석형 등의 성형수술</li> </ul>

※ 산후조리원, 외국의 의료기관, 언어심리치료목적의 특수교육원 등은 공제대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05-2. 의료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의료비

###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

의약품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및 한약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외품을 제외한다.</li></u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일반의약품<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오용·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등의 처방없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기대되는 의약품</li><li>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 등의 전문지식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li><li>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li></ol></li><li>2.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li><li>3. “한약”이란 동물·식물 등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건조·절단·정제된 생약</li></o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두통약 등의 일반의약품</li><li>• 치료·요양목적으로 구입한 한약</li></ul>

# 05-2. 의료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의료비

###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li><li>2. 시각장애이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li><li>3. 청각장애이용 골도전화기</li><li>4. 시각장애이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li><li>5. 지체장애이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li><li>6.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li><li>7. 지체장애이용 지팡이 및 시각장애이용 흰지팡이</li><li>8. 청각장애이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li><li>9. 목발, 성인용 보행기</li><li>10.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li><li>11.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li><li>12.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li><li>13. 청각장애이용 음향표시장치</li><li>14. 시각장애이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li><li>15. 시각장애이용 전자도서 확대기</li></o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료기상사 등에서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li><li>•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의료비가 아닌 그 밖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li></ul>

# 05-2. 의료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의료비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인당 50만원 이내

(6) 보청기 구입비용

- 외국에서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 불가

# 05-2. 의료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의료비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보조생식술이란 난소에서 난자를 직접 채취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술로써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말함

# 05-2. 의료비세액공제

## 3) 적용방법

### (2)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li><li>•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연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지출한 의료비</li><li>• 회사에서 지원받았으나 과세대상으로 총급여액에 합산된 의료지원비(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고운맘카드지원금)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li><li>•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li><li>•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li><li>•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li><li>• 해당연도에 미지급된 의료비</li></ul>

# 05-2. 의료비세액공제

## 3) 적용방법

### (3)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구입 등에 지출한 비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등</li><li>• 치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이송료</li><li>•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한약포함) ·건강증진제·보조식품</li><li>• 산후조리원(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li><li>•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교육원 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를 위한 지출한 비용</li><li>• 외국소재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li><li>• 간병인에 지급하는 간병비</li></ul>

# 05-2. 의료비세액공제

## 4) 공제대상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임

의료비 지출대상자	의료비 공제액	
	그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액×3%	그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액×3%
(1)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 자* 및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본인 등의 의료비-(총급여 × 3% - 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2) 그 밖에 공제대상자	Min{(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공제대상금액 없음
(3)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2)) * “만 65세 이상자”란 1950.12.31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함	(1) 전액공제 + (2) Min{(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총급여액×3%, 700만원}	(1) 본인 등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 그 밖에 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2) “0”

## 05-3.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 범위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1) 공제대상자

공제대상기간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의 충족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	○	무관	○

# 05-3. 교육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1)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교육기관별 공제대상자 판단

교육기관	부모	배우자·직계비속· 입양자·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어린이집	X	○	X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만)	X	○	X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	○	X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위취득과정(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	○	X
국외교육기관	○	○	X
대학원	○	X	X
직업능력개발훈련	○	X	X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	X	X
장애인재활교육기관	○	○	○

# 05-3. 교육비세액공제

## 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2)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

※ 교육기관별 공제대상자 판단

공제대상 항목	공제 제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li> <li>• 급식비</li> <li>•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li> <li>•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등학생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 한도)</li> <li>•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li> <li>• 학교 등(교육기관)에서 구입한 교재비</li> <li>•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li> <li>• 도서비(초·중·고등학교 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등</li> <li>•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등</li> <li>✓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li> <li>✓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li> <li>✓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li> <li>✓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li> </ul> </li> </ul>

# 05-3. 교육비세액공제

## 3) 공제 적용방법

### (1) 국내교육비

#### ①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고 본인이 부담할 것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임</li> <li>• 과세대상으로 총급여에 합산 된 자녀학자금 지원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 전에 지출한 국내·국외 교육비</li> <li>• 퇴직 후 종전회사에서 받은 본인의 교육비 및 자녀학자금</li> <li>• 퇴사 후 유학을 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li> </ul>

#### ②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고 본인이 부담할 것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li> <li>•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처남에게 지출한 교육비</li> <li>• 소득금액요건을 초과한 배우자에게 지출한 교육비</li> </ul>

#### ③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소정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교육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이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수강료</li> </ul>

# 05-3. 교육비세액공제

## 3) 공제 적용방법

### (2) 국외교육비

#### ① 공제 적용대상

구 분		국외교육비 공제적용 요건	
근로자의 근무장 소	국외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에서 동거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li> </ul>	
	국내근무자	해외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교육비 적용과 동일</li> </ul>
		해외의 중학교 이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유학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li> <li>✓ 유학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동등학력자)</li> <li>✓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 자</li> <li>✓ 부모 모두와 국외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li> </ul>

#### ②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li> <li>•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에 해당하는 교육기관</li> <li>•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및 편·입학을 위한 대학부설 예비교육과정 등</li> </ul>

# 05-3. 교육비세액공제

## 3) 공제 적용방법

### (3)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장애인인 근로자 본인 및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아동, 직계존속, 기초수급자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하

#### ※ 지자체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지역 내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말함

# 05-3. 교육비세액공제

## 4) 공제시기

구분	공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선납)한 연도
재학 중 선납한 교육비	지출(선납)한 연도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지출(납부)한 연도
대학교(원) 입학 전에 납부한 입학금	대학(원)생이 된 연도
근무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비과세교육비 반납 시	교육비 공제불가
용자받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	지출(납부)한 연도

# 05-3. 교육비세액공제

## 5) 공제대상금액과 공제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Min(교육비 지출액,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의 15%

### (1) 공제한도

근로자본인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대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1인당 연 300만원	1인당 연 900만원	전액 공제

### (2) 연도 중 입학 또는 진학하는 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

구분	공제한도
취학 전 아동 → 초등학생이 된 경우	취학 전, 초등학생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고등학생 →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 지출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지출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

# 05-4. 기부금세액공제

종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이월된 기부금은 종전규정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 이월액		당해연도('15년) 지출분
'13년 이전 지출분	'14년 지출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 없음

종합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③ 주택자금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처상환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특별세액공제	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⑤ 기부금(이월분)								특별세액공제	⑦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⑥ 계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⑦ 차감소득금액											⑧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⑧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⑨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5년 이후 기부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⑩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⑪ 청약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⑫ 주택청약종합저축									⑩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⑬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⑪ 계		
		⑪ 투자조합출자 등												⑫ 표준세액공제		
		⑫ 신용카드등 사용액												⑬ 납세조합공제		
		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⑭ 주택차입금		
		⑭ 우리사주조합 기부금(2014년 이전 기부분)												⑮ 외국납부		

# 05-4. 기부금세액공제

## 1) 개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15%(3천만원 초과분 25%)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 범위			구분	코드번호	공제한도	이월공제기간
	① 정치자금기부금			20	근로소득금액	-
	②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①)	5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① - ②)×30%	-
	④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기부금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30%</li> <li>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이월분 포함))</li> </ul>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5년	
	종교단체 기부금	41				
공제대상금액	공제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3천만원 초과분 25%)					

# 05-4. 기부금세액공제

## 2)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기간	본인 이외 공제대상자의 충족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1.1~12.31 지출분	○	○	○	○

유형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입양 자	직계존속	그 외 부양가족
정치자금 기부금	○	해당없음			
법정기부금	○	○	○	○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	○	○	○	○

# 05-4. 기부금세액공제

## 2)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 (1)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으로써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이내의 금액은 "정치자금세액공제" 적용대상

### (2)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3)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회비
-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05-4. 기부금세액공제

## 8) 허위·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 (1)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가산세	
회사가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x(3/1000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액 X 40%
근로자가 수정신고 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2)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

기부자의 인적사항·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 05-5.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

## 1) 적용특례

### (1) 적용특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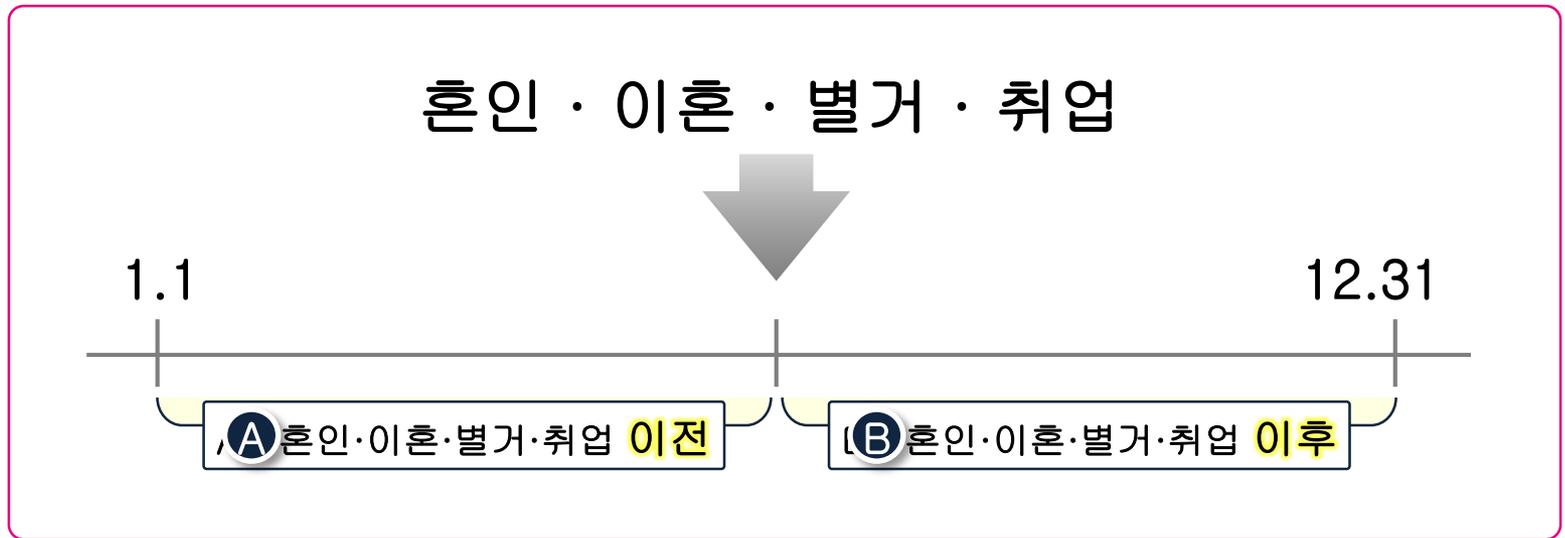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항 목	특별공제 항목			
	보험료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적용특례 적용 여부	○	○	○	X

# 05-5.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

## 1) 적용특례

### (2) 적용방법



A 구간 내에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전(前) 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05-6.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1) 적용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 ✓ 특별공제·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2) 적용방법

-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05-6. 표준세액공제

## ※ “표준세액공제” 적용대상자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②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로서 아래에

$$(특별소득공제 적용 후 감소되는 산출세액 + 특별세액공제액 + 월세세액공제액)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적용후 감소되는 산출세액 = 특별공제 적용전 산출세액 - 특별소득공제 반영후 산출세액

주1)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①과 ② 중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0”으로 함)한 후 결정세액
  - ②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는 “0”으로 함)한 후 결정세액

구분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① > ②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① < ②	표준세액공제 적용

# 09. 월세 세액공제

## 1) 공제요건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전근무지 포함)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세부내용
① 세대주요건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②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거주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

구분	월세액공제 적용 여부	
	'13년 이전	'14년 이후
•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주가 공제신청한 경우	○	○
• 세대원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공제신청한 경우	×	○
•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을 공제 신청한 경우	×	×
•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공제 신청한 경우		

# 09. 월세 세액공제

## 2) 월세액 계산과 세액공제액 계산

### (1)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text{공제대상 월세액} = \frac{\text{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월세액}}{\text{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일수}} \times \text{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2) 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

$$\text{세액공제액} = \text{Min}(\text{공제대상 월세액}, \text{연 750만원}) \times 10\%$$

## 3)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③ 집주인(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증빙자료 등)

## 4) 월세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제한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09. 월세 세액공제

##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검토

### <임대차계약서 자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소주도 동화군 마시면 누유리 332-1 토라길빌라 201호**

면적	158㎡
지상층면적	40㎡

2. 계약의 종류

계약종류: **임대차** (월세) (임대차 계약)

3. 임대료

임대료: **600만원** (월)

4. 임대기간

임대기간: **2014년 1월 10일** ~ **2016년 1월 10일**

5. 임대차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1** 임차인이 총급여액이 7만 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일 것 (원칙)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예외)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2**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일 것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할 것

**4** 2014년의 월세 지출금액 입력  
 • 세법상의 월세액 계산법 반영  
 (1일 월세액 X 2014년 임차일수)

주민등록표 [등·변·분]

성명	김영철	생년월일	1985-09-27
주소	소주도 동화군 마시면 누유리 332-1 토라길빌라 201호		

[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김은철	④주민등록번호 620227-1434561
⑤주소 소주도 동화군 마시면 누유리 332-1 토라길빌라 201호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①임대인 성명 (상호)	②주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택 유형 면적(㎡)	④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⑤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⑥연간 월세액(원)	⑦세액공제금액 (원)
김영철	551020-2123456	6 40	소주도 동화군 마시면 누유리 332-1 토라길빌라 201호	2014.01.10 2016.01.10	600만원	

※ ①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⑤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계약서의 기개 (레지) 2013.01.01

특별세액공제	정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공제율	공제액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25%)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금액		납부일
		납세액(원화)	신정서계출입금기간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과목
월세액공제	월세액			10%	